

홍콩법인 VS. 조지아 법인

2021년 11월

* 본 자료는 당사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법률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도용을 금합니다.

법인의 기본요건

홍콩법인

조지아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주요건

최소1인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 100% 외국인 소유 가능

이사요건

최소1인 이상의 개인(만18세 이상) 혹은 법인, 외국인(현지 비거주자) 가능

자본금요건

최소 HKD0.01의 납입자본, 최소1주

납입자본 규정 없음, 주식 추가발행은 안됨

간사

정식명칭: Company Secretary
법인관계자 홍콩 거주인 혹은 TCSP 라이선스
보유자 가능
(당사에서 법인 간사 서비스 제공)

정식명칭: Company Secretary
필수사항 아님

사업장주소지

홍콩 사업장 주소 필요(우편함 불가)
(당사에서 등기 주소 및 우편물 서비스 제공)

조지아 사업장 주소 필요(우편함 불가)
(당사에서 등기 주소 및 우편물 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및 설립절차

홍콩

조지아 Limited Liability Company

법인설립 구비서류

1. 여권사본
2. 주소증빙서류(영문등본)
3. 설립신청서 작성
4. 본인인증

법인설립절차

1. 설립 구비서류 제출
2. 정관 및 설립 등기서류를 당사가 준비
3. 서류 싸인하여 당사로 발송
4. 등기소에 서류 접수
5. 승인 후, 회사키트(회사명판 및 인쇄물등) 제작
6. 고객분께 설립서류 및 회사키트 전달
7. 설립업무 완료 및 은행계좌 개설

1. 설립 구비서류 제출
2. 정관 및 설립 등기서류를 당사가 준비
3. 서류 싸인하여 당사로 발송
4. 등기소에 서류 접수
4. 설립업무 완료 및 은행(혹은 EMI) 계좌 개설

법인설립 소요기간

(급행) 2~3영업일, (일반) 7~9영업일

7~10영업일

은행계좌 개설

홍콩		조지아 Limited Liability Company
법인계좌 신청가능 은행	씨티은행, OCBC WING HANG BANK, KEB HANA BANK 등 별도 상담	개설규정이 까다로우며, 현지 은행계좌 개설 진행시 재확인 필요
비대면 개설 가능 은행	씨티은행 (한국의 회사가 한국씨티은행 법인계좌를 사용하시거나 신규개설 하셔야만 가능)	Transferwise, 웨스턴 유니온, 레볼루트, Remitly, WorldRemit,페이팔, 머니그램 인터내셔널, 페이오니아, N26, Xoom, XE.com, 스크릴, 몬조은행, 스트라이프, Instarem, 로이드 बैंक, OFX, 네셔널웨스트 민스터 은행, 바클리즈, 모네스, CurrencyFair, TransferGo 등 EMI 나 기타 역외은행 계좌로 (직접) 개설 가능
비대면 개설 가능 역외 은행	키프로스 소재의 세케르 은행 (개설비 USD400)	
법인 계좌 개설 신청 시 구비서류	사업관련 서류 - 은행이나 EMI에 따라 상이함 (사업계획서 / 브로셔 / 카다로그 / 파트너 협약계약서 혹은 사업 관련 계약서 / 인보이스 혹은 영수증 / 기존 사업자의 은행 거래내역서 / 기존 사업자등록증 영문버전 등)	

연간갱신

홍콩

조지아 Limited Liability Company

연간 갱신 및 연차 보고

법인설립일을 기준으로 매년 연간갱신 및 연차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여기에서 연차보고란 세무보고를 뜻하는 것이 아닌,
주주/이사 정보 등기를 뜻함)

법인설립일을 기준으로 매년
연간갱신 및 연차보고를 진행해야 함

정기 주주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함.

결산일로부터 9개월 이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함.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함.

회계 및 회계감사

홍콩

조지아 Limited Liability Company

회계 및 회계감사

홍콩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정도 시점에 첫 세무신고서 발행됨.
두번째 해부터는 회계결산일을 기준으로 매년 기장 및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함.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홍콩에서 인정하는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진행 되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반드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들에게 제시해야 함.

단, 소규모법인(매출총액이 HKD 2,000,000 미만일 경우)은 감사보고서 제출 없이 세무신고서만 제출해도 되지만, 홍콩기업조례에 근거하여, 모든 홍콩법인 매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회계감사도 동시 진행 추천.

(당사에서 회계 및 외부감사 어랜지 서비스 제공)

회계기장 및 세무신고는 거래내역 및 거래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별도견적

회계감사 의무

홍콩기업조례에 따라 모든 법인이 회계감사 대상

회계감사 의무 있으며, 특정요건 충족 시 감사면제 가능

법인세율 및 세무규정

홍콩

조지아 Limited Liability Company

세무규정 및
법인세율

사업행위의 유무, 과세이익의 유무에 관계 없이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세무국에서 세무신고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당사에서 세무신고 서비스 제공)

법인세는 없으며, 이익금 배당시 15% 원천징수

단, 대한민국 거주인의 경우,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 실제부담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의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이 유보한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간주하게 되는 관계로, 국내에서는 이러한 법인의
유보이익을 모두 배당으로 인식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법인세
(Profits Tax)

HKD2,000,000(한화3억정도) 이하 8.25%
초과시에 그 초과분에 대해 16.5%

없음

조세혜택

홍콩

조지아 Limited Liability Company

과세수익 HKD 2M @ 8.25% 적용,
초과 과세수익 @ 16.5% 적용

예시)
과세가능수익(조세상 세전이익)이 HKD 2.5M의 경우,

HKD 2M X 8.25% = 165,000

HKD 0.5M X 16.5% = 82,500

조세혜택

총 납부해야 할 법인세: HKD 247,500

법인세 없음

* 그룹사의 경우 한 법인만 누진세율로 신청가능

홍콩정부 재정예산 결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매년 변경)

2020/21년도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최대 HKD 10,000
(혹은 최대 100%)까지 추가 공제.

부가세 및 기타세금

		홍콩	조지아 Limited Liability Company
부가세		없음	18%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
자본금 취득세		없음	없음
원천징수세액	배당소득: 국외법인에 대한 배당 시 원천징수의무 없음 소득발생지 기준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총 로열티 30% 혹은 100%에 대해 16.5% 과세		배당소득: 조지아 이외의 거주자: 5% 조세회피지역 거주자: 15% 로열티소득: 조지아 이외의 거주자: 5% 조세회피지역 거주자: 15% 조지아 현지거주자 개인: 20% 조지아 현지거주자 법인: 15% * 조세협정국의 경우, 협정문을 기준으로 과세함
배당소득세	없음 (다만, 한국거주인의 경우 종소세 대상)		없음 (다만, 한국거주인의 경우 종소세 대상) <u>*한국-조지아는 2016년 11월17일 조세협정발효</u>

감사합니다.

저희 미르아시아는 고객님의 성공을 기원드리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희망 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찾아 뵙기를 바랍니다.

미르아시아 카카오톡채널 바로가기

미르아시아한국대표번호: 02-543-6187

카카오톡/위챗/라인/텔레그램: mirrasia1

미르아시아홈페이지: www.mirrasia.com